

문서 번호	일자리경제과-13874
결재일자	2015.4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지역경제담당	일자리경제담당	기획경제담당	부구청장	
최경숙	김도형	지덕환	정은수	04/13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 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	이용식 代이정희 김용환 김하연		

**- 서울특별시 성북구 -**  
**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(안) 확정**

**2015. 4.**



**기획경제국  
일자리경제과**

# - 서울특별시 성북구 -

##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(안) 확정

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사용 항목을 개정(추가)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### I

## 추진 경위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(안)
  - ⇒ 일자리경제과 - 53462 (2014. 12. 24) 「구청장 방침」 사항임.
- 입법예고 : 2015. 2. 3 ~ 2. 23(20일간)
- 부패 / 인권 / 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법제심사 의뢰 : 이견없음

### II

## 주요 개정 내용

-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(제20조 3항에 3호 추가)
  - ⇒ 중소기업 및 중·소상공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- ※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0조 3항에 3호 ⇒ 4호로 변경
  - ⇒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

### Ⅲ

## 향후 계획

-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--- 2015. 4. 6.
- 조례(안) 구의회 제출 --- 2015 4월
- 공포 및 시행 --- 2015 5월

붙임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(안) 1부. 끝.